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9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군부대 급식용역 세액공제 신설	2

I. 개요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7.
- (3) 회 부 일 : 2025. 2.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부대 급식용역 세액공제 신설(김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군부대 급식용역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5 신설) ○ 공제대상: 내국인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 ○ 공제율: 30% ○ 적용기한: 2030. 12. 31.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 김태호의원안 2025. 2. 7. 발의(의안번호 7995)

□ 개정안은 양질의 군부대 급식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의 3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국방부는 부대 내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취사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2년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 위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13개 부대에, 2024년 26개 부대에 이어 2025년에는 총 49개 부대에서 급식 위탁제를 실시할 계획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군 인력 구조 전면 개편을 골자로 군인은 전투와 작전 등 군인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군급식 등

의 지원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문민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고¹⁾, 급식분야 국정과제(89-3, 군대 급식의 질 향상)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병사식당 민간위탁 시범사업 과제가 포함되어 진행되었음.

□ 그런데 사병에 대해 책정된 낮은 급식비 단가로 인해 급식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이 쉽지 않아 위탁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13,000원이 책정되어 2016년 7,334원 대비 약 1.77배 수준이지만, 현실적인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병에 대해 책정된 급식비 단가]

(기준: 일, 단위: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급식비 단가	7,334	7,481	7,855	8,012	8,493	8,790	11,000	13,000	13,000	13,000

주: 2022년 하반기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

일반인 대비 활동량이 많은 사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책정된 13,000원이라는 단가가 끼니 기준이 아닌 1일(3끼) 기준이라는 점, 국가안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차출된 장병에 대한 의식주 차원의 지원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물가수준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식업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여하여 급식 제공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 장병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접적인 세제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예산 증액을 통한 급식비 단가 현실화임.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국방부는 고열량을 요하는 군인 급식비가 3년간 동결되어 급식의 질 유지가 제한되는 점,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높음에도 국내 농·어가와의 상생을 위하여 국내산을 우선 조달하고 있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1일당 단가를 15,000원으로 인상하여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13,000원으로 수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음.

이후 국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단가를 15,000원으로 인상하여 총 2,202억 6,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최종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군 부대 급식업무 민간위탁 사업은 국방부의 재정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현실화된 단가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확정하는 것이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임.

둘째, 군 급식의 경우 낮은 단가에 따라 수익률은 저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규모 식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업체의 지원 및 경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업체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초 이루어진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 민간위탁 급식 입찰의 경우에도 10개 업체가 참여하였음.

- 한편,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